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12. 9.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1년 11월 15일

나. 발 의 자: 최봉희 의원 외 5명

다. 회부일자: 2021년 11월 19일

라. 상정일자: 제234회 영등포구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1. 11. 23.)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최봉희 의원)

가. 제안이유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체력 증진 및 건전한 여가 활동을 도모하고,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보조금의 지원 및 범위 (안 제5조)
- 생활체육교실 등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안 제6조 ~ 제7조)
- 지도·감독 및 환수 (안 제8조 ~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옥연)

○ 본 조례안은

-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우리구의 체육 진흥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증진하고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조례로서, 총10개의 조문과 2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현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에서 구의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성질이 다른 사무를 하나의 조례에서 관장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사무를 구분하여 조문을 분리하고 체계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각각 조례를 정비하고자 지난 제233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를 우선 정비하고,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은 본 조례로 따로 정한 것으로 보임.

○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에서 조례의 상위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및

「학교체육진흥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영등포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증진하고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 제정 목적을 명시하고,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

- 안 제4조는 체육의 진흥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는 지원 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체육동호인 조직, 체육단체, 체육행사 등 세부적인 대상 사업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안 제6조는 생활체육교실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대상 과목의 선정, 강사 위촉 및 해촉, 수강료의 징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안 제7조는 생활체육교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할 수 있게 하고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르도록 하여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보임.
- 안 제8조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체육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환수하도록 규정하였음.
- 부칙에서 시행일을 2022년 1월 1일로 정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조례」는 폐지하도록 하였음.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성격이 다른 문화예술과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사무가 하나의 조례로 포괄하여 규정하던 것에서 체육 진흥에 관한 조문만을 분리하여 정비하

고,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증진하여 지역의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을 활성화시키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사료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안

(최봉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06
----------	-----

발의년월일: 2021년 11월 일

발의자: 최봉희 의원 외 5명

1. 제안이유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영등포구민의 체력 증진 및 건전한 여가 활동을 도모하고,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보조금의 지원 및 범위에 관한 규정(안 제5조)

다. 생활체육교실 등의 운영 및 생활체육교실 등의 위탁에 관한 규정
(안 제6조 ~ 제7조)

라. 지도·감독 및 환수에 관한 규정 (안 제8조 ~ 제9조)

3. 제정안 :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학교체육진흥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2021.11.11. ~ 11.15.) 결과 :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증진하고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문체육”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2.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구에서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3. “체육단체”란 체육 전반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구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4. “생활체육교실”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일상적이고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교육·보급하는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체육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체육의 진흥 등)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

다)은 구민의 건강, 체력증진, 여가선용을 위하여 생활체육교실, 건전여가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생활체육, 전문체육의 저변확대 및 진흥을 도모하고자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체육동호인조직 육성, 체육단체 운영, 체육행사 개최 등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 및 범위) ① 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조직, 체육단체, 체육행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동)민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2. 체육단체의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3. 전국·시·도 단위 생활체육 대회 참가 지원과 국내·외 체육교류 사업
4. 각종 생활체육교실 및 체육진흥과 관련된 취미·여가교실의 설치·운영
5. 체육단체 및 체육동호인조직 육성과 체육꿈나무 지원
6. 학교체육 및 직장체육(직장운동경기부 포함)의 육성·지원
7. 노인 건강의 유지·증진 및 구민 체력인증 사업
8.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9.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2항 각 호의 구체적인 사업대상, 범위, 방법 및 지원내역은 별표 1과 같다.

④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

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생활체육교실 등의 운영)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증진을 위하여 제5조제2항의 생활체육교실, 건전여가교실(이하 “교실”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실 대상과목은 구민의 선호도, 내용의 다양화, 보급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선정하며 대상과목은 별표 2와 같다.

③ 교실의 강사는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지도강사로서 품위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교실 운영을 태만히 할 경우

2. 해당 교실 폐지 및 교육과정 종료 등으로 교실 운영을 할 수 없을 때

⑤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위하여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⑥ 수강료 금액, 징수 수납 등 수강료 관련 세부 규정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생활체육교실 등의 위탁) ① 구청장은 교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해당 교실의 위치, 규모, 위탁 조건,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을 문서로 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교실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생활체육교실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제5조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체육단체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단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환수) 구청장은 제8조의 지도·감독 결과 체육단체가 거짓이나 부정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는 폐지한다.

[별표 1]

진흥사업대상(제5조제3항 관련)

구분	대상 및 범위	방법
체육행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각종 체육행사: 구(동)민체육대회, 서울시민체육대회, 장애인체육대회 등 2. 종목별대회: 각 종목별 구청장배(기), 협회(연맹)장배(기) 대회, 유·청소년 축구대회 등 3. 스포츠교류 : 국·내외, 자매결연지 스포츠 교류 행사 및 사업 등 	개최 및 지원
체육단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체육단체: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회, 영등포구장애인체육회, 영등포구 태권도 시범단 등 2. 체육동호인조직: 각종 체육대회 참가, 학교 및 일반체육 시설 사용 등 3. 체육꿈나무: 운동(경기)부 육성학교, 생활체육 유소년 단체 등 	육성 및 지원
생활체육교실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동 생활체육교실, 축구 및 풋살교실, 기타 체육교실 등 2. 학교체육(학교운동부 포함), 직장체육(직장운동경기부 포함) 등 3. 노인 건강·유지 및 구민 체력인증 사업 등 4. 체육진흥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설치 및 운영

[별표 2]

대상과목(종목)[제6조제2항 관련]

구 분		과 목(종 목)	비고
교 육	생활체육교실	축구, 풋살, 족구, 배구, 농구, 야구, 탁구, 마라톤, 볼링, 테니스, 배드민턴, 스쿼시, 수영, 게이트볼, 생활체조, 에어로빅, 기공체조, 검도, 태권도, 보디빌딩, 양궁, 자전거, 롤러스포츠, 스키, 골프, 암벽등반, 요트(용선), 윈드서핑, 사격, e-스포츠, 바둑 등	
	건강여가교실	댄스스포츠, 요가, 필라테스, 단전호흡, 복싱다이어트, 장기, 뉴스포츠 등	